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86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문진석·김교흥·이건태

박정현 • 이연희 • 윤종군

김기표・강준현・손명수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를 인가 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2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제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을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를 "결과에 따라"로, "실시하고"를 "실시하거나"로, "우선적으로 할"을 "우선 또는 차등하여지원할"로 한다.

다만,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준공 영제 대상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한다.

- ③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상법」 제462조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을 것
- 2. 차고지를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 경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것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준공영제 관리·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제3항에 따라회수할 수 있다.
 - 1. 제21조제13항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23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1조를 위반하여 준공영제와 관련한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 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9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제 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3항"을 "제14항"으 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1호 중 "제21조제13항"을 "제21조제1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준공 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 다)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4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 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 고,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운영에 소용되 는 인건비, 유류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 다.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②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 운송사업 및 대통령령-----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③ ~ ⑩ (생 략)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저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u>여객</u>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

③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④</u> ~ <u>①</u> (현행 제3항부터 제1
0항까지와 같음)
세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u>여객자동</u>
차 우수사업은 견여하는 자(이

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 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 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교 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u>결과가 우수한</u> <u>자에게</u>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 서 발급 등을 <u>실시하고</u> 제50조

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
<u>차 운수사업자</u>
<u>다만,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u>
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이하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
업자"라 한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u>다만, 준공영제 대</u>
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는 공표하여
<u>야 한다.</u>
③
<u>결과에 따라</u>
<u>실시하거나</u>

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u>우선적</u> <u>으로 할</u>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 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신 설>

) –
<u>우선 또는 차등</u>
하여 지원할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⑫ (현행과 같음)
③ 준공영제 대상 운송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u>하여야 한다.</u>
 1. 「상법」 제462조에 따라 이
 익을 배당하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을
것 것
스 2. 차고지를 매각하는 경우 사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를
<u>반을 것</u>
<u>⑭</u>

제21조의2(준공영제 관리·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준공영제 대

상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 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영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 며,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제51조제3항에 따라 회 수할 수 있다.

- 1. 제21조제13항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23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1조를 위반하여 준공영제와 관련한 보조금을 거짓이나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즉 시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
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	한 준용규정)
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	
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	
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	
조(제1항 전단, <u>제4항부터 제6</u>	<u>제</u> 5항부터 제7
<u>항까지, 제9항</u> 및 <u>제10항</u> 만 해	<u>항까지-제10항제11항</u>
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	
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	
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u>제13항</u> 만 해당한다), 제25조	<u>제14항</u>
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	
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명할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 1. ~ 20의8. (생략)
- 21. <u>제21조제13항</u>(제49조의9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 한 경우

22. ~ 41. (생략)

② ~ ④ (생 략)

1. ~ 20의8. (현행과 같음)	
21. <u>제21조제14항</u>	
22.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